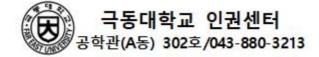
인권센터운영규정 개정(안)

2024. 04.



1. 개정 사유

•주임교수 위촉을 통한 인권센터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향상

2. 개정 요지

- 1) 제8조(업무와구성)7항 주임교수 위촉 관련 내용 추가
- 2) 제8조(업무와구성)8항 주임교수 담당 업무 조항 신설

3. 시행일

• 2024.04. 중 예정

4. 향후일정

- 1) 홈페이지 의견 수렴
- 2)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3) 개정 완료 보고 및 공포

5.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업무와 구성) ⑦ 센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사건 조사 및 처리, 조정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 및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8조(업무와 구성) ⑦ 센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사건 조사 및 처리, 조정,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 및 전문연구원, 주임교수,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4.00.> 8 주임교수는 센터 내 제반 업무 및 상담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4.04.00.>

인권센터운영규정

<극동규정 제214호> <시행일 2024.04.00.>

제 정: 2019.05.17. 전문개정: 2023.01.10. 개 정: 2024.04.00.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극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를 지원하는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 및 「극동대학교대학원생권리장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이하 "성폭력 등"이라 한다)을 기반하여 행위자의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와 나호 모두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 나.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를 포함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를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호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동 및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성차에 기반하여 불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하여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 5. "2차 피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6. "피해자"란 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 7. "행위자"란 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 8. "신고인"이란 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발생을 본교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10. "사건관계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12. "대리인"이란 사건관계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3. "관계부서"란 사건관계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등) 센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규정에 따른다.
 - ② 예산 주무부서의 장은 인권센터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인권센터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강의료 등 지급) ① 센터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 프로그램의 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강의료를 지 급한다.
 - ② 강의료는 본교 각종수당등에관한지급세칙에 따른다. 단, 예산 범위에 따라 그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 하다.
 - ②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7조(정보의 관리 및 보관) ① 센터를 이용하는 구성원의 사적인 정보 및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구성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이용 구성원에 대한 정보와 상담 내용을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에 알릴 수 있다.
 - ② 센터를 이용한 구성원이 상담 내용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 성이 없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센터를 이용한 타인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상담일지 등)은 센터에서 5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구성과 업무

- 제8조(업무와 구성) ①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의 제반 활동과 인권침 해 등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원을 남, 여 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본교 직제규정에 따라 보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센터장은 학내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센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성폭력 등의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성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성고충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과정
 - 을 이수한 자와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 ⑦ 센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사건 조사 및 처리, 조정,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 및 전문 연구원, 주임교수,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4.00>
 - ⑧ 주임교수는 센터 내 제반 업무 및 상담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4.04.00>
- 제9조(성고충상담실) ① 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인권센터와 교학처에서 담당하며, 성고충상담 실은 인권센터 내에 둔다.
 - ② 고충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원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 ③ 상담원은 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상담, 신고 접수, 예비조사, 보고
 - 2.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3.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및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운영
 - 4. 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제도 수립, 교육 및 홍보
 - 5.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홍보
 - 6.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7. 기타 인권 및 성폭력 등 관련 업무

제3장 위원회

제1절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교직원
- 2 학생
-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센터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3조(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 1. 센터의 운영 및 평가
- 2. 센터 관련 규정 및 세칙의 제 · 개정
- 3. 인권침해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
-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의 각 호일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 2. 위원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등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③ 논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제15조(설치) 학내 성폭력 등의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인권센터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학생 위원, 본교 전임교원, 사무직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은 사무처장, 인권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임교수, 교수대표, 직원대표, 대학원생대표, 학부생대표 등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선임하며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센터 소속 고충상담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업무) 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중요 정책 심의·의결
- 2. 성폭력 등 사건의 조사 및 성희롱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 3.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 4. 기타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의결
- 5.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 결과 총장보고

제18조(제척, 기피,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위원은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 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3. 사건관계자와 동일한 학과(부)나 부서 소속 교수, 직원, 학생인 경우
- 4. 사건관계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 5. 불공정한 업무 집행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② 사건관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 신청은 사건관

계자당 1회에 한한다.

- ③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 신청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서 및 사유서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성폭력 등의 사건이 접수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성폭력 등의 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센터에 보관하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조사와 처리

- 제20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상담 신청 및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②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인권센터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③ 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인권센터는 신고를 받은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상담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단,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⑥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⑦ 센터는 한 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 제21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센터는 신고인의 사건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수령함으로써 사건을 접수하고,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 ② 센터는 제보 혹은 신고접수를 받은 당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자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22조(통보 및 신고 의무) ① 센터장은 신고 사건이 성폭력 사건임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 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2. 신고를 철회한 경우 또는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 3. 신고 내용이 단순한 불편 사항, 불친절 행위, 일방적 불만 제기, 센터 외 본교 각 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 민원성 신고 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센터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고 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 된 사건을 직접 조사 및 중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위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업무 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들의 의결을 통하여 10일 단위로 2회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사건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사건관계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정보의 조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⑥ 제5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①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⑧ 조사 결과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 격하다
- 제25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심의위원회는 성폭력 등 사건의 심의 과정 중에 신고인, 피신고인 등 사건관계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6조(조정 및 중재)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 ③ 조정 및 중재가 성립된 경우 각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④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⑤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7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제28조(시정조치 및 징계 요청)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1. 피해자 보호 조치(접근 및 연락 금지 포함)
 - 2. 행위자(피신고인)의 사과 권고
 - 3. 행위자(피신고인)에게 재발방지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 4.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 5. 행위자(피신고인)가 재범이거나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경우 가중 징계요구
 - 6.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 및 학과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9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센터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시정조치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 ⑦ 심의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아닌 행위자(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피신고인)의 소속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29조(가중조치 및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1. 피신고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2. 피신고인이 당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등 가해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 4. 피신고인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사건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을 노출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경우
- ② 위원장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있다.
 - 1.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 사건관계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4. 센터의 조사와 시정을 방해하는 경우
 - 5.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 제30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의신청) ① 본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심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추가적 증거 자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제32조(사건의 공개) ① 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 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사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신고인) 보호나 행위자(피신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익명화 조치 후 결정문을 공개할 수있다.

제5장 피해자 보호 등

- 제33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④ 성폭력 등을 조사·심의·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자에게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4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35조(비밀유지의무) ① 성희롱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신고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②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계자의 동의 없이 사건관계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건관계자는 성희롱 등의 사건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관한 내용을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2차 피해의 방지) ① 누구든지 피해자(신고인) 및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며, 센터 및 위원회는 피해자(신고인) 및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 2.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신고인) 및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한 행위
- 3.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신고인) 및 참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센터와 위원회는 피해자(신고인) 및 참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결정 이전에 행위자(피신고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이들이 속한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본교의 구성원일 경우 그 자에 대하여도 제28조의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업무방해) ①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센터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 구성원 또는 위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협박, 괴롭힘등의 행위
 - 2. 위계로써 센터 구성원 또는 위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3.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센터장의 요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나 이와 관계된 피해자(신고인) 또는 행위자(피신고인)의 조사를 배제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본교의 구성원일 경우 그 자에 대하여도 제28조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제49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성폭력성희롱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0일부터 시행한다.